

장기보장성보험 적립부분 만기유지환급금 제도 Ⅱ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적용계약)

- ①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보험계약(이하 보험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② 이 특별약관은 적립부분 적용이율을 금리고정형으로 운영하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사항이 모두 충족된 보험계약에 대하여 만기유지환급금을 적용합니다.
 1. 보험계약이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제3호의 "순수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보장성보험"인 경우
 2. 계약체결시점에 산출한 보험계약의 "예상만기환급금"이 "총납입예상적립보험료"와 "총납입예상 환급가능 가입금액기준 보장보험료"의 합계 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3. 보험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납입이 완료되고 보험기간 종료시점까지 유지된 보험계약
- ④ 제3항 제2호의 "예상만기환급금"은 계약체결시점의 적립보험료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납입해당일에 정상납입하는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이 보험계약의 보장부분 적용이율(단, 금리고정형인 경우 적립부분 적용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 ⑤ 제3항 제2호의 "총납입예상적립보험료"는 계약체결시점의 적립보험료를 기준으로 적립보험료의 납입기간과 납입주기를 곱한 적립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 ⑥ 제3항 제2호의 "총납입예상 환급가능 가입금액기준 보장보험료"라 함은 "환급가능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보장보험료 기준으로 보장보험료 납입기간과 납입주기를 곱한 보장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 ⑦ 제6항에서 "환급가능 가입금액"은 영업보험료 100만원 미만일 경우 100만원으로 하며, 영업보험료 100만원 이상일 경우 보험 가입금액과 1,000만원 중 작거나 같은 금액으로 합니다.
- ⑧ 계약을 체결할때에 피보험자가 될 자가 출생전자녀(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에서 적립보험료는 태아 보장기간이 끝난 이후의 적립보험료를 말합니다.

제2조("만기유지환급금"의 정의 및 지급)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만기유지환급금"이라 함은 총 납입한 적립보험료와 "총납입 환급가능 가입금액기준 보장보험료"의 합계 금액에서 이 보험계약의 "보장부분 적용이율로 적립한 예상만기환급금"과 "적립부분 공시이율로 적립한 예상만기환급금"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금리고정형 상품의 경우 보장부분 적용이율 및 적립부분 공시이율은 적립부분 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총납입 환급가능 가입금액기준 보장보험료"라 함은 납입기간 동안 납입한 환급가능 가입금액 기준의 보장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단, "총납입 환급가능 가입금액기준 보장보험료"는 실제 납입한 보장보험료를 한도로 합니다.
- ③ 제1항의 예상만기환급금은 실제 납입한 적립보험료로 산출한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 ④ "만기유지환급금"이 0원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만기유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만기유지환급금"이 0원보다 큰 경우 일의자리에서 올림하여 계산한 만기유지환급금을 이 보험계약의 만기환급금에 더하여 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예 시	만기유지환급금 지급예시
-----	--------------

· 5년만기 전기납, 월납, 적립보험료 2만원인 금리고정형 보험계약

- 총납입예상적립보험료 = 120만원(2만원 x 5년 x 12개월)
- 총납입예상 환급가능 가입금액기준 보장보험료 = 6만원(1천원 x 5년 x 12개월)
- 예상만기환급금 사례별 만기유지환급금

(예시1) 예상만기환급금(적립부분 적용이율 적용) = 130만원
 : 총납입예상적립보험료 + 총납입예상 환급가능 가입금액기준 보장보험료(126만원)
 < 예상만기환급금(적립부분 적용이율 적용)(130만원)
 → 만기환급금 금액과 상관없이 만기유지환급금 적용계약 아님
 → 만기유지환급금 = 0

(예시2) 예상만기환급금(보장부분 적용이율 적용) = 110만원
 예상만기환급금(적립부분 적용이율 적용) = 100만원
 : 총납입예상적립보험료 + 총납입예상 환급가능 가입금액기준 보장보험료(126만원)
 > 예상만기환급금(적립부분 적용이율 적용)(100만원)
 → 만기유지환급금 적용계약
 → 만기유지환급금 = 126만원 - Max[110만원, 100만원]
 = 16만원

(예시3) 예상만기환급금(보장부분 적용이율 적용) = 130만원
 예상만기환급금(적립부분 공시이율 적용) = 110만원
 : 총납입예상적립보험료 + 총납입예상 환급가능 가입금액기준 보장보험료(126만원)
 > 예상만기환급금(적립부분 적용이율 적용)(110만원)
 → 만기유지환급금 적용계약
 → 만기유지환급금 = 126만원 - Max[110만원, 130만원]
 = - 4만원

만기유지환급금이 0원보다 작은 경우에는 만기유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음

-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만기유지환급금은 "총납입평균적립보험료"와 "총납입 환급가능 가입금액기준 보장보험료"의 합계 금액에서 이 보험계약의 "보장부분 적용이율로 적립한 평균적립 만기환급금"을 차감한 금액(0원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 0원으로 하며, 0원보다 큰 경우 일의자리에서 올림)을 한도로 합니다.
- 제5항의 "총납입평균적립보험료"는 납입기간동안 납입한 "평균적립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 제6항의 "평균적립보험료"는 납입방법에 따른 보험가입후 1년간 납입한 적립보험료의 평균보험료를 말합니다.
- 제5항의 "보장부분 적용이율로 적립한 평균적립 만기환급금"은 평균적립보험료로 산출한 평균적립순보험료를 이 보험계약의 보장부분 적용이율(단, 금리고정형의 경우 적립부분 적용이율)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제3조(만기유지환급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만기유지환급금"은 보험계약 종료시점에 제1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적용계약)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적용하며, 이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만기유지환급금" 및 "만기유지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계약자 적립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제1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적용계약) 제3항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유효한 계약이 보험기간중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납입한 환급가능 가입금액기준 보장보험료 및 적립보험료에 한하여 제2조("만기유지환급금"의 정의 및 지급)를 적용합니다.
- 이 특별약관을 추가하는 보통약관 보험계약의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환급가능 가입금액" 또는 "환급가능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보장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2조(만기유지환급금의 정의 및 지급) 제2항의 "총납입 환급가능 가입금액기준 보장보험료"는 변경 후 환급가능 가입금액기준 보장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 이 보험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만기유지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